



Compliance Guideline

구매계약 체결





/ Our vision is your freedom.
In our creation, your to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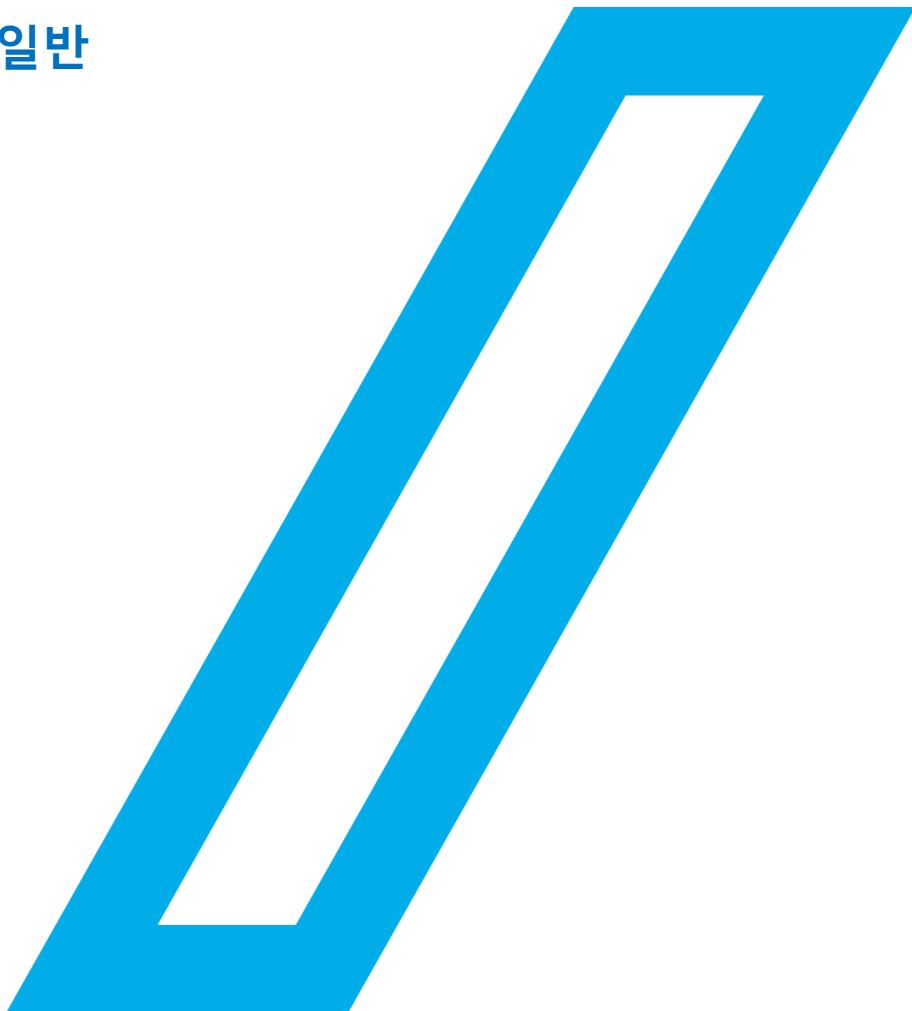
제 1 장 계약 일반	5
1. 계약의 성립 요건	5
2. 계약 협상시 유의사항	6
3. 표준 계약서 사용	7
4. 국문 표준계약서 사용시 유의사항	8
4.1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 필수적 사용	8
4.2 임의 수정 및 삭제 금지	8
4.3 필수 기재사항의 명확한 작성 및 확인	8
4.4 서명 · 날인 절차 준수	8
4.5 계약서 보존	8
5. 영문 표준계약서 사용시 유의사항	9
5.1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원칙적 사용	9
5.2 주요 조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검토	9
5.3 전문가 검토 필수	12
6. 계약체결 전 내부검토	13
7.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14
제 2 장 구매계약 관련 Compliance (하도급법 및 하도급 계약)	16
1. 하도급법의 목적	16
2. 하도급법의 특징 (특별법)	16
3. 하도급법 적용대상	17
3.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17
3.2 법 적용 대상 거래	18
4. 하도급법의 구조	21
5. 거래단계별 준수사항	22

제 3 장 구매계약 체결시 준수사항	24
1.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24
1.1 개념	24
1.2 준수사항	24
1.3 위반사례	26
1.4 업무시 유의사항 (Do's & Don'ts)	27
1.5 위반시 제재	27
2. 부당한 특약 금지	29
2.1 개념	29
2.2 준수사항	29
2.3 부당특약 유형	29
2.4 위반사례	42
2.5 업무시 유의사항 (Do's & Don'ts)	44
2.6 위반시 제재	44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45
3.1 개념	45
3.2 준수사항	45
3.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45
3.4 위반사례	50
3.5 업무시 유의사항 (Do's & Don'ts)	51
3.6 위반시 제재	51

Compliance Guideline

구매계약 체결

제1장 계약 일반



제1장 계약 일반

1.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으로 표현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의사의 합치 여부가 계약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에서 청약자는 계약 조건이나 계약 문서를 먼저 제시하거나 제공한 당사자를 의미하며, 승낙자는 이를 제안받은 상대 당사자를 말합니다.
-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 ✓ 이때, 승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¹
- ✓ 또한, 승낙자가 청약 내용에 조건을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 이는 기존 청약에 대한 거절인 동시에 위와 같이 일부 조건을 추가/변경한 내용으로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을 한 것이 되므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²

[TIP] PO 나 Invoice 등 문서에 첨부된 거래조건

상대방과 주고받는 Purchase Order(PO) 나 Invoice 등에 거래조건이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등의 제목으로 작은 글씨로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첨부되곤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제시되는 거래조건 또한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약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 이를 단순히 형식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이 어려운 조건이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거래에 착수할 경우, 해당 거래조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됩니다. 반대로, 상대방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문서(Purchase Order, 발주서, 견적서, 확인서 등)에 회사의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회사의 거래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건 적용을 방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¹ 민법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²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의사의 합치 외에도 계약 성립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의사의 합치	계약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서로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의사표시의 진정성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착오, 사기, 강박 등과 같은 하자가 없어야 하며,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목적의 적법성	계약의 목적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의 법률행위 능력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협상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이전의 협상 과정에서도 각종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협상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력 있는 조건(Binding Terms)과 비구속 조건(Non-binding Terms)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민감한 조항(예: 독점권, 배타적 공급, 손해배상, 보증 등)은 반드시 법무 및 유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은 누락 없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구두 합의에 의존한 계약 체결은 지양해야 합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고 유효하나, 당사자 간 권리 ·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계약 체결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만약 구두 계약의 효력을 다투게 될 경우,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표준 계약서 사용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는 법적 문서로, 회사의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어느 쪽의 계약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상 과정에서는 계약서 초안(draft)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상대방의 초안을 먼저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협상력이 강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시하는 당사자(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계약 조건(예: 계약 목적의 범위, 대가의 지급 조건, 보증 조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상대방(B)으로 하여금 이를 우선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조건을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B)의 입장에서는 제시받은 계약서 초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자(A)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 후 필요한 조건을 추가·수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초안을 먼저 제시하는 측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계약의 성격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한 경우, 또는 해당 유형의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초안을 먼저 제공받은 후, 그 내용의 강점과 약점,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의 요구 조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을 단순히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회사 입장에서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 초안을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 이행 기간, 대금 조건, 권리·의무, 손해 배상, 해지 요건, 분쟁해결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하며, 부속 문서(예: 사양서, 견적서, 납기표 등)도 필요 시 별도 첨부하고 법적 효력을 명시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의 언어, 준거법(Governing Law), 관할권(Jurisdiction) 역시 사전에 명확히 합의되어야 합니다.

구매관련 회사의 표준 계약서 양식은 Hanmaru > MAPS(구매통합시스템) > 계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문 표준계약서 사용시 유의사항

4.1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 필수적 사용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 · 등록된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첨부된 국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 영문 표준계약서 사용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문 표준계약서가 아닌 영문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영문 표준계약서에 하도급법 준수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의 거래에는 반드시 국문 표준계약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2 임의 수정 및 삭제 금지

국문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하도급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 및 삭제 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 또는 계약검토 주관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필수 기재사항의 명확한 작성 및 확인

계약서에 위탁일, 납기, 검사방법, 대금 지급조건 등 법정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 본문과 사양서, 견적서, 납기표 등 첨부문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4.4 서명 · 날인 절차 준수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하며, 법인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5 계약서 보존

하도급법상 계약서 및 거래 관련 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위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관련한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는 7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 문서관리 규정 등에 따라 법정 보존 기간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5. 영문 표준계약서 사용시 유의사항

5.1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 원칙적 사용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등록된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는 대한민국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³ 하도급법의 내용을 반영한 국문 표준계약서보다 내용이 완화된 영문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 시 국문 표준계약서를 영문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2 주요 조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검토

영문 표현과 법률용어는 한국어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³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4. 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러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만약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은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거래, 국내 법인과 어느 일방의 해외 법인 간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법령의 개정, 시행 여부에 따라 본문의 적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1)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 (2)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3)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 (4)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 (5)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따라서 Indemnity(손해배상), Warranty(보증), Termination(계약 해지), 비밀유지기간 (Confidentiality) 등 핵심 조항은 반드시 의미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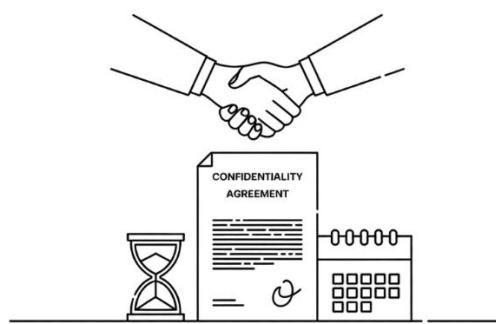
[TIP] 비밀유지기간의 설정

비밀유지기간은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발전 속도, 중요도, 투입된 개발 기간과 비용, 개발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과 같이 발전 속도가 빨라 1~2년만 지나도 가치가 상실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보통 3~5년 내외로, 발전 속도가 느린 기술이나 노하우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길게 5~10년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밀유지의무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장래에 오히려 부메랑처럼 작용하여 회사의 다른 사업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도가 낮은 비밀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일부를 부득이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실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의 비밀유지의무 부과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향후 영업 활동이나 연구개발 활동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Governing Law(준거법)와 Jurisdiction(관할)처럼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률과 관할 법원(또는 중재기관)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TIP] 국제계약에서의 중재 vs 소송

국제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재가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고,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률 전문가가 중재를 담당하고, 1심 절차로 종료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중재규정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이 아니라 국내 중재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소송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국가에서 진행하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제3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생소한 국가의 법원에서 해당 국가의 법과 언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현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계약의 분쟁 해결은 주로 제3국에서 중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도시에는 각국의 중재원이 있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그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중재원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불리가 비슷한 제3국을 선택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비(非)아시아 지역에서는 런던이나 파리가 주요 중재지로 선택됩니다.

중재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재 장소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절차적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는 특정 국가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보통 영어를 사용합니다. 중재인은 1명 또는 3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원이 많을수록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만큼 중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중재는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1회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논의사항은 모두 비밀로 유지되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중재의 존재 여부, 내용, 결과를 외부에 발설할 수 없습니다.

5.3 전문가 검토 필수

영문 계약은 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법률적 해석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체결 전 반드시 법무 또는 계약검토 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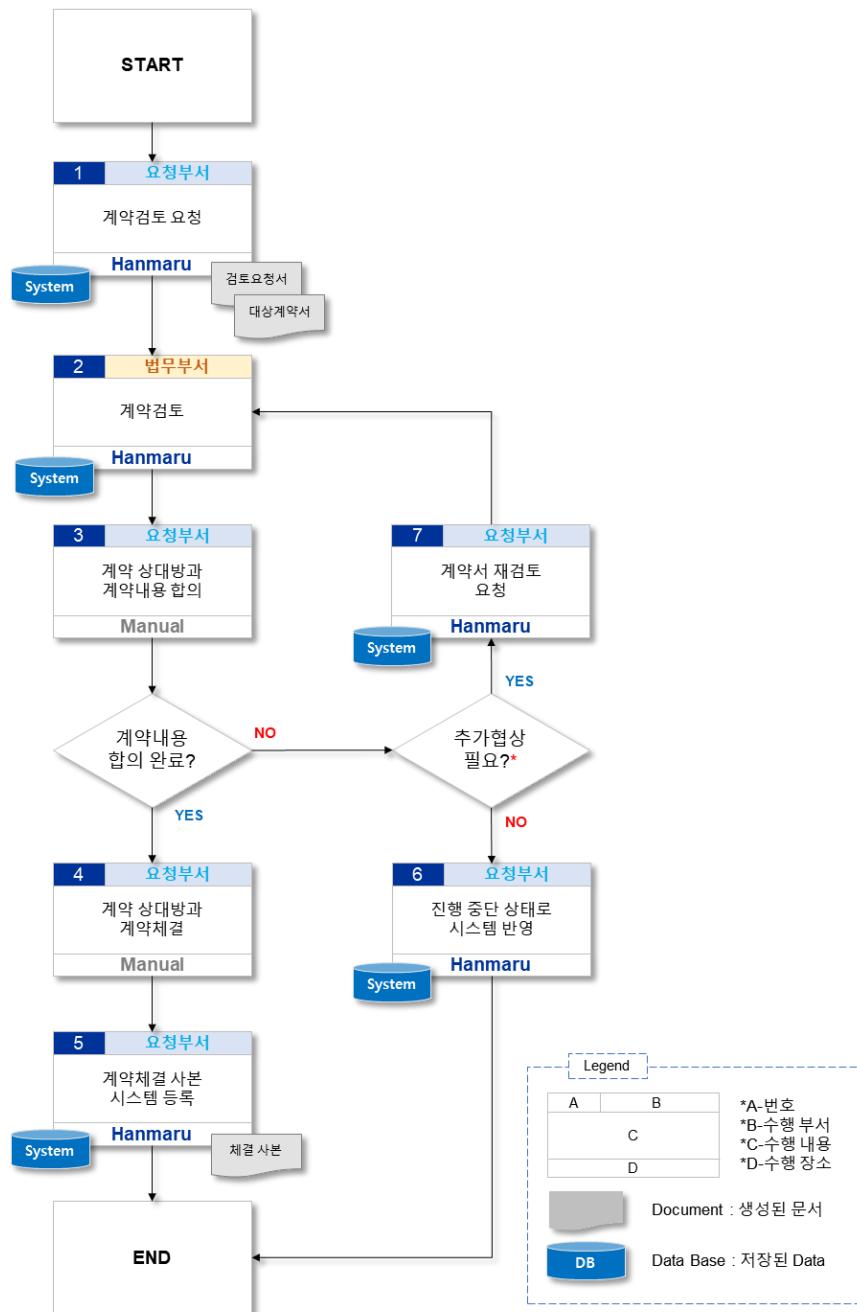
다만, 영문 계약 뿐 아니라 국문 계약서 역시 체결 전에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계약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법인과의 거래	해외 법인과의 거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민국 하도급법 적용대상 O	대한민국 하도급법 적용대상 X
국문 표준계약서의 필수적 사용 	영문 표준계약서의 원칙적 사용 

6. 계약체결 전 내부검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검토 주관 부서의 계약검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검토는 회사 G/W 인 Hanmaru 시스템의 전자결재를 통해 진행되며, 계약 검토, 체결, 체결 후 체결사본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계약 관련 모든 활동의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반대 제안이 제시되었거나, 계약 체결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히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 고위험 계약, 제3국 제재 대상이 포함된 거래, 또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예: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은 사전 리스크 평가 및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계약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수단입니다.

7.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담당자는 반드시 소속 결재권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금액이나 관련 리스크 수준에 따라 상위 결재권자의 추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전결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회사 인감 날인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인감 날인 신청은 반드시 Hanmaru 시스템을 통해 전자결재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인감 날인은 회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식적 절차이자,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감 날인은 계약 체결에 대한 승인과 인감 사용에 대한 내부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TIP]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법인인감은, 회사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인감도장으로, 회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수단입니다. 법인인감은 관할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문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록된 법인인감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의 진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중요한 법률 문서나 계약체결시 첨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인감은 회사 내부 또는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인 인감입니다. 관할 등기소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내부에서 별도로 등록 및 관리됩니다. 주로 내부 결재 문서나 일반 실무용 문서에 사용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의 법률 행위 문서나 계약체결 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행위는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장하고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법인인감 날인이 없더라도 회사 대표자의 권한있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인인감 날인을 통해 외부에 강력한 대외적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인감의 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인감 날인 역시 법률행위로 간주되며, 사용인감과 같은 보조적 증명 문서를 통해 그 신뢰도와 법적 효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모두 날인 행위 자체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법적 효력의 명확성과 대외적 신뢰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RESTRICTED



/ Our vision is your freedom.

In our creation, your to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

Compliance Guideline

구매계약 체결

제2장 구매계약 관련 Compliance



제2장 구매계약 관련 Compliance (하도급법 및 하도급 계약)

1. 하도급법의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칭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법 취지 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 거래가 상호 보완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2. 하도급법의 특징 (특별법)

하도급법은 민법 및 상법의 특별법으로, 하도급법상 자연 이자⁴가 민법 및 상법상 법정이자율⁵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칭함)의 특별법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내용⁶보다 우선 적용됩니다.⁷

[TIP]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율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⁴ 선급금 등 자연지급 시의 자연이율 고시(공정위 고시)에 따라 연리 15.5% 적용

⁵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⁶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⁷ 하도급법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법 적용대상

3.1 법 적용 대상 사업자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수행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⁸이 아닌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5년 내 기업¹⁰ 중견기업¹¹

또한, 이러한 하도급법의 적용은 당사자 중 하나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¹²

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⁹ 단,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제조 및 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그리고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¹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용자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름

¹¹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5에서 정하는 업종별 연간매출액 이하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업자 또는 연간매출액 2조 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에,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에 한하여 수급사업자로 봄

¹² 본문의 '외국기업에 대한 하도급법의 미적용'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4. 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TIP] 외국기업에 대한 하도급법의 미적용

원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이고 수급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은 규모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될 수 없어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법 적용 대상 거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위탁	수리위탁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 및 건설을 업으로 하는 ¹³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러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만약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던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거래, 국내 법인과 어느 일방의 해외 법인 간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하위 법령의 개정, 시행 여부에 따라 본문의 적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1) B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A의 요청·지시인 경우
- (2)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 이전에 A와 B 간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되었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교섭·체결이 사실상 A와 B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 (3) 국외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에서 A와 B 간 체결된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 (4) A의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하여 B 또는 B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 (5) 국외의 하도급거래가 국내에서 A와 B 간 이루어진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그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

¹³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

건설위탁	용역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제조 및 용역 위탁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위탁의 유형]

- 제조, 판매, 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 포함)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 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 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수리업자가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신제품을 원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

[TIP]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나,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 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 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 하여 납품한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공정위는 실무적으로 해당 '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인력 등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회사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업'을 회사의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

[용역위탁의 유형]

-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 설계를 위탁하는 경우
-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의 디자인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을 위탁하는 경우
- 시설물 및 건축물의 유지, 보수, 청소, 경비를 위탁하는 경우
-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 개발, 공급 및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거래가 하도급거래(제조위탁, 용역위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 법무 및 유관부서에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하도급법의 구조

하도급법은 아래 표와 같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구분	내용
원사업자	의무사항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 선금금의 지급 (제6조) ·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7조) · 검사 결과의 서면 통지 (제9조) · 하도급대금 지급 (제13조)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의3)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5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통지 (제16조)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 (제16조의2)
	금지사항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특약 금지 (제3조의 4)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 부당반품 금지 (제10조) · 부당감액 금지 (제11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2)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제12조의3)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제17조)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제18조) · 보복조치 금지 (제19조) · 탈법행위 금지 (제20조)
발주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4조)
수급사업자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의 보존 (제3조) · 위탁업무의 성실한 이행 및 위법행위 협조 금지 (제21조)

※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강제되는 대금지급 보증은 제외함 (제13조의 2)

5. 거래단계별 준수사항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 거래의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단계구분	내용
계약 체결 단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 · 부당한 특약 금지 (제3조의 4)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계약 이행 단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5조) · 선급금의 지급 (제6조) · 내국신용장의 개설 (제7조)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 검사 결과의 서면 통지 (제9조) · 부당반품 금지 (제10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2)
대금 지급 단계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감액 금지 (제11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제12조) · 하도급대금 지급 (제13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5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통지 (제16조)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 (제16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제17조)
전체 거래 과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제12조의3)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3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제18조) · 보복조치 금지 (제19조) · 탈법행위 금지 (제20조)



Compliance Guideline

구매계약 체결

제3장 구매계약 체결시 준수사항



제3장 구매계약 체결시 준수사항

1.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1.1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 이후 위탁 내용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업무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된 계약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1.2 준수사항

1.2.1 서면의 발급 (하도급 계약체결)

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기명날인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모든 항목을 포함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 ·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법정 기재사항)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목적물의 내용
- ②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 수량 · 제공일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다만, ⑦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 하도급거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 양 당사자간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의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기해야 함)(예: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서)

1.2.2 발급 시점

하도급 계약은 반드시 기명날인의 형태로 체결되어야 하며, 제조 위탁의 경우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이전에,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용역 수행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1.2.3 발급 방법

양 당사자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전자메일, Web-Site, 저장매체 등을 통해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4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아래와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구분	보존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계약서 (추가 · 변경 계약서 및 통지서 포함) • 목적물 수령 증명서 • 목적물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대금, 선급금 및 지연이자 지급관련 서류 • 원재료 제공 및 제공에 따른 대금공제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감액관련 서류 • 그 밖에 하도급대금의 결정, 조정 등과 관련된 서류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5년 권장)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관련 서류 • 기술자료 제공 관련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

¹⁴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 ·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하도급계약이 종료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1.3 위반사례

서면발급 의무 위반: 지연발급

[사실관계]

(주)서연이화는 2010. 3. 12. ~ 2023. 3. 23.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도어 트림 제작용 금형 190건을 제조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 ~ 최대 3,058일)에 발급함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거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함

서면발급 의무 위반: 불완전 서면의 발급

[사실관계]

케이지모빌리티(주)는 2021. 2. ~ 2022. 4.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표준 외주 거래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웹밴을 통해 수시로 부품소요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였음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과 같은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 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또한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만 기재되었을 뿐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포함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하도급 거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함

1.4 업무시 유의사항 (Do's & Don'ts)

Do's

- 하도급 계약은 회사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기명날인을 통해 체결한다.
- 하도급 계약은 반드시 관련 거래의 착수 또는 시작 전에 체결한다.
- 하도급 계약서 및 관련 문서는 하도급법상 요구사항뿐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고려할 때, 거래관련 문서는 5년 이상, 기술자료 요구 관련 문서는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 등에 따라 보존한다.
-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반드시 신규 계약을 체결 한다.
-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계약서의 내용이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무 및 유관부서에 문의한다.

Don'ts

- 구매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거래를 착수하거나, 거래 착수 후 구매계약(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구매계약 체결 시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 조건을 누락하여 체결하는 행위
(※ 단, 기본계약서가 아닌 개별계약서에 해당 거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이 경우 개별계약서에도 기명날인 필요)
-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이 포함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회사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5 위반시 제재

구분	제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등의 위탁 및 기존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위탁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p>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가능</p>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회사에 부과 가능</p>

- (양벌규정) 상기 위반행위의 행위자 소속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 부과.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 가능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개인에
부과 가능

2. 부당한 특약 금지

2.1 개념

"부당특약"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 ·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준수사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서 예시된 계약조건들은 부당특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적절히 수정해야 합니다.

부당특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어도 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당특약조항에 대해서는 무효가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¹⁵

2.3 부당특약 유형

2.3.1 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철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등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보관 · 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 ②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¹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③ 제2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협정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25.4.1 시행일 2025.10.2]

2.3.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④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 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2.3.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약정
- ②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항목·수량·단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
- ④ 주요 자재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형강재(건설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강철)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약정
- ⑤ 수급사업자는 입찰 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

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2.3.4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진행중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각종 수검·협조 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 하에 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③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④ 수급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위반 시 기성금 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2.3.5 원사업자(발주자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 ②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

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지 못한다는 약정

- ④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⑤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2.3.6 원사업자의 지시¹⁶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中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수행한 비용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
- ②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재료의 재질(색상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재작업 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총 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하는 공사를 말한다) · 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공사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시 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⑥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는 약정

2.3.7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¹⁶ 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

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수급사업자가 완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하자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 ④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정
- ⑤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한 시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당해 목적물(예, 소프트웨어)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⑥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예,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

2.3.8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①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수해 · 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연장은 없다는 약정
- ② 전염병(예, 조류독감)의 확산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 ③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④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도중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⑤ 수급사업자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제작하는 도중에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시스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정

2.3.9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¹⁷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¹⁸

- ①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은 반드시 견적기준을 준수하여 입찰하여야 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사업자가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이윤)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기준(예, 토목현장 6%, 건축현장 4%)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의 이윤은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는 약정
- ④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예, 5%) 범위내에서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계약이행, 선금금이행, 하자이행)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민간 보험회사가 의무가입이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을 말한다)료를 포함한다는 약정
- ⑤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단가에 포함하여 견적 하여야 한다는 약정

2.3.10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

¹⁷ 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¹⁸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음

기 위한 협의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약정

- ④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약정
- ⑤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⑥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2.3.1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내용의 확인을 일체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②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가 이미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으로 인한 공기 또는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

2.3.12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①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는 약정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약정

2.3.13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 ① 하도급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원사업자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원사업자의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수급사업자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거래 관행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약정

2.3.1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①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 까지 연기하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③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무관하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 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키는 약정

2.3.15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 ②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설계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비 등이 아닌 단순 노무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 ③ 원사업자의 위탁사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예, 승인도) 등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의 결과물로 간주하여 원사업자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는 약정

2.3.16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해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비밀준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약정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원사업자에게만 계약내용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예, 업무상 필요)를 두어 사실상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는 약정

2.3.1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①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요구하는 약정

2.3.18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 ① 수급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실질지배자 등 제3자가 수급사업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② 고가 사급자재(원사업자가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재 등)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약정

2.3.19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검사항목, 검사기관 등 납품한 제품의 검사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원사업자의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발주자의 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④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등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2.3.20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 를 제한하는 약정

-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원사업자로부터 불합격 통지서를 받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약정

- ③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하는 경우 재검사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2.3.21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수급사업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해요소의 제거에 관한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② 원사업자의 다른 수급사업자와 공통적으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외에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안전장비 또는 수급사업자의 단독 공정에 사용되는 안전장비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2.3.22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①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사업자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정한다는 약정(단, 원사업자의 특정 규정 및 지침이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이전에 교부된 경우는 제외)
- ②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분쟁의 발생 원인이나 내용을 불문하고 원사업자의 결정에 따른다는 약정
- ③ 계약의 조문해석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유권 해석에 따르기로 하는 약정

2.3.23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①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발주처와 원사업자 간 계약조건과 동일조건으로 한다는 약정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약정

2.3.24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①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손실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 전액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 ②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수급사업자의 채무불이행(예, 노무, 자재, 장비)에 대비하여 추가 지급(이행)보증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하는 약정
- ③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산점을 수급사업자의 위탁종료일이 아닌 원사업자의 위탁종료일로 한다는 약정

2.3.2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등"이라 한다)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 ② 천재지변 등 위탁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자재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2.3.26 계약 해제 · 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① 약정 기한보다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의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상승, 납품조건 및 도면내용에 대한 견적누락 등을 이유로 계약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발주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전달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약정
- ④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수급사업자의 권리 일체 또한 즉시 포기하여야 한다

는 약정

2.3.2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① 원사업자가 공급한 자재 등이 불량으로 판정되더라도 납기일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약정
- ② 공급받은 자재 등의 수량이 부족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급을 요청하더라도 운반·보관비용, 지체상금 등은 별도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③ 납기지연일자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 또는 목적물 수령거부·지연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지체상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는 약정

2.4 위반사례

검사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사실관계]

(주)서연이화는 하도급계약서에 '검사 판정에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자체보상금 외 별도로 이유없이 (주)서연이화의 요구에 따라 전액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거래 조건을 설정함

▼ 대상 하도급계약서 (발췌)

제 7 조 : 검수 및 납품

- 1)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기술자 입회 아래 중간검사를 행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2)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갑"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갑"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갑"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조 :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

- 1) 제품 설계를 함에 있어 "갑"이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을"은 그 제품 사용 및 판매가 여하한 특허권 및 기타 공업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을"은 특허권 및 기타공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 자체 변상금

- 1)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 /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 2) "을"의 납기 지연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형의 자체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을"은 이유없이 "갑"의 적합한 요구에 따라 이의 전액을 배상한다.
- 3) 다음 사유로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전 1)항 및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문서에 의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
 - 나)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나, 부당특약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조치함(해당 계약조건이 부당특약이라는 점은 인정됨을 전제)

계약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사실관계]**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배관 제작 · 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 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 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함

▼ 대상 구매사양서 내용**[구매사양서 특약조건]**

- ① 공급자는 발주자의 본 구매사양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작업은 ‘시공사’에 의해 수행하고 그로 인한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나, 부당특약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조치함(해당 계약조건이 부당특약이라는 점은 인정됨을 전제)



2.5 업무시 유의사항 (Do's & Don'ts)

Do's

- 계약체결 전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당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에 확인한다.
-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다.
- 계약서, 발주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서류에 기재된 조건이 상호 이행 가능하고 공정한지 검토한다.
- 계약 체결 시 발생 가능한 설계 변경, 민원, 산업재해 등에 대한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를 사전에 협의하고 서면화 한다.

Don'ts

-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2.6 위반시 제재

구분	제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 	<p>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가능</p>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회사에 부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벌규정) 상기 위반행위의 행위자 소속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 부과.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가능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개인에 부과 가능</p>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3.1 개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2 준수사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거래 규모, 경영상황, 작업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예시된 사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3.3.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률씩(예컨대, 100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억~100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씩(예컨대, 10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만원 미만 품목은 3%씩)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④ 완성차 제조 원사업자가 신규로 다수의 부품제조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위탁품목별로 일정률씩(예컨대, 엔진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10%씩, 타이어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5%씩, 브레이크제조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씩)

단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는 250원, B는 300원, C는 350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0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⑥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⑦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3.3.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환율변동,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 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의 견적가격 또는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빼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 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3.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종류, 사양, 대금지급 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이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

유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차별하여 결정하는 행위

3.3.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초안 상태의 생산량 증대계획 또는 신규 수주계획 문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종전계약보다 발주량을 대폭 늘려 줄 것처럼, 또는 그와 같이 수주가 이루어 질 것처럼 언질을 주어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한 후 실제로는 발주량을 늘려주지 않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해당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지급조건인 것처럼 내비춰 단가를 낮게 책정 한 후 실제로는 만기 6개월의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3.3.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동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할당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단가를 확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 없이 원사업자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해당 합의를 무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객관적 · 합리적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 원사업자 일방의 영업수지 개선계획에 따라 협조요청 등을 명분으로 한 통보나 강요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⑥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 또는 복리후생 비용 등의 인상, 임직원수의 증가, 영업이익률 증가 등 영업수지가 개선되는 등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 단가인하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 인원감원, 영업이익률 등이 하락하거나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영업수지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서 원사업자가 관례적으로 다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3.3.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3.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업계 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에게 입찰 조건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최저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와 단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

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3.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부수된 제품의 경우 판매 호조로 원사업자 경영적자의 원인이 아님에도 원사업자가 경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의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등에 따른 비용 발생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3.4 위반사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사실관계]

리드건설(주)는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 2,900 만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조정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등의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되었음)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400 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사실관계]

한국조선해양(舊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였음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51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48개 하도급 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다르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 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2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

3.5 업무시 유의사항 (Do's & Don'ts)

Do's

- 하도급대금 결정 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반영한다.
- 거래 규모, 작업 난이도, 원가 구조,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하도급대금을 산정한다.
- 동일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납품 조건, 품질, 비용구조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단가를 설정한다.
- 하도급대금 결정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문서로 3년 이상의 (5년 이상 권장) 기간 동안 회사의 문서관리 규정 등에 따라 보존한다.

Don'ts

- 수급사업자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정 비율로 일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요청, 원가절감, 경영상의 위기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3.6 위반시 제재

구분	제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경우 	<p>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가능</p>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회사에 부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벌규정) 상기 위반행위의 행위자 소속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 부과. 단,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가능 	<p>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개인에 부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손해배상)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제가능 	<p>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한도로 손해배상책임 부담</p>



Thank you

